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변경〉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523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성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변경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6. 26.
3.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적고,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되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하지만 협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추가 출자 등으로 출자금은 연중 수시 변동함에도 매년 변경등기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수산업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 출자금을 포함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며, 유사 협동기관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출좌 1좌의 금액만 등기하는 바,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출자금 관련 등기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제2호, 제95조제2항 등).

Ⅲ. 검토의견

1.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변경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설립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계좌의 납입 방법’을 삭제하고 ‘출자 1계좌의 금액’만 기재하도록 하며,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2항 제2호 및 제95조제2항·제3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2조(설립등기) ① (생략)	제92조(설립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u>	2. <u>출자 1계좌의 금액</u>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5조(변경등기) ① (생략)	제95조(변경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2조제2항제2호의 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 기준 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조합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인이 된다.	③ ----- 제1항-----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92조¹⁾는 설립등기신청서에 목적·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임원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²⁾는 이러한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3주 이내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2조(설립등기)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2.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지구별수협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16.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7. 설립 후 현물출자(現物出資)를 약정한 경우에는 그 출자 재산의 명칭·수량·가격 및 출자자의 성명·주소와 현금출자로의 전환 및 환매특약 조건
18. 설립 후 양수하기로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수량·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주소

에 변경등기하도록 하되,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하도록 하고 있음.

제92조 및 제95조는 지구별수협에 직접 적용되고, 제108조·제113조·제113조의10 및 제168조의 준용규정³⁾에 따라 업종별수협, 수산물가공수협,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함) 및 중앙회에도 준용됨.

이는 조합등 및 중앙회의 설립 및 주요 변경사항을 등기부에 공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변경등기) ① 제9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92조제2항제2호의 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준용규정) 업종별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및 **제6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생략>

제113조(준용규정)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부터 제103조(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후단 생략>

제113조의10(준용규정) ①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3,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제45조, 제49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5조, 제68조, 제70조제1항·제3항·제4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호,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제84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제85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7조제17호·제18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제3항,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제28조 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로 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6조제6항·제7항, 제50조제2항, 제51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1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제53조, 제53조의2(제6항을 제외한다),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0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1항·제3항·제4항,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제7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 및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를 준용한다.

시하여 조합원·회원·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되, 수시로 변동하는 출자 관련 사항은 연 1회만 등기하도록 하여 출자 관련 외의 사항에 비해서는 등기의무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출자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연 1회 등기하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등 및 중앙회는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 출자금 총액이 수시로 변동하여 사실상 매년 변경등기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합등 및 중앙회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2)4)와 제151조제1항제2호5)에 따라 변경등기 시 출자증가액의 0.4%를 등록면허세로, 해당 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발생함.

4)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5)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출자금 변경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조 합	188	178	128	103
중앙회	87	51	45	86
합계	275	229	173	189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특히 일반법인의 자본금 증가는 사업상 자금조달 필요에 따른 선택적 행위인 경우가 많은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자유로워 출자금의 증감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법인을 전제로 한 자본증가 등기 및 과세체계를 협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협동조합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⁶⁾

□ 개정안은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제외하여 조합등 및 중앙회의 연례적 변경등기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등기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조합의 경우 설립인가 단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출자금 확보 여부를 심사⁷⁾하고 있고, 조합등 및 중앙회는 재무상태표 공고,

6) 이한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등록면허세 과세완화 방안,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제8권 제1호, 2019.5.

7)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16조제1항·제77조·제78조 및 제80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할에 따라 설립하는 경우 분할 대상 조합이 분할로 인하여 조합운영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인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구별수협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로서 최소한

결산보고서 비치⁸⁾ 및 경영공시 등을 통해 출자금과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제외하더라도 조합원·회원·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이나 보호가 저하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른 협동조합 관련 법령상 출자금 관련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음.

<협동조합 출자금 관련 설립등기 사항>

구분	근거 조문	출자금 관련 등기사항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제45조	출자 1좌의 금액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농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90조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산림조합	「산림조합법」 제75조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06조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다만,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설립등기 사항에서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삭제하고 출자 1좌의 금액만 등기하

200명 이상일 것

나. 삭제 <2014. 12. 23.>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일 것

2.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물가공수협”이라 한다)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구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자의 과반수일 것

나. 삭제 <2014. 12. 23.>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8)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조(결산 등)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 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안)이 2026년 2월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대로 총 출자계좌 수를 등기사항에서 제외하는 경우 현행법 제95조제5항⁹⁾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74조제1항¹⁰⁾은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의 감소를 모두 ‘출자감소’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95조제5항은 출자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출자계좌 수가 더 이상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자계좌 수가 감소하더라도 그 감소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제95조제5항에서 ‘출자감소’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면 출자계좌 수의 감소에 대해서도 변경등기와 첨부서류 제출이

9)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5조(변경등기) ⑤ 출자감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74조제2항 및 제75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고하거나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0)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① 지구별수협은 출자 1계좌의 금액 또는 출자계좌 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필요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제95조제5항의 ‘출자감소’를 ‘출자 1계좌의 금액 감소’로 한정하는 등 개정 후에도 변경등기가 필요한 출자감소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출자계좌 수의 감소도 조합등 및 중앙회의 재산적 기초와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른 채권자 보호 절차는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 제74조의 출자감소 약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둘째, 개정안대로 개정할 경우 출자 1계좌의 ‘납입 방법’도 설립 등기신청서 기재사항에서 제외되므로, 이것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납입 방법까지 제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납입 방법은 총 출자계좌 수나 납입출자금 총액과 달리 조합원·회원의 변동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이 납입 방법까지 등기사항에서 제외하려는 것인지 입법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의 취지가 총 출자금과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만을 등기 사항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면, 그 취지에 맞추어 안 제92조제2항제2호를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을 통해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 시 등기사항이 축소되어 수협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수협중앙회 및 단위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출자금 등을 이해관계인에게 경영공시하고 있어 등기보다 쉽게 상시 열람이 가능하고, 개정안을 통해 조합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¹⁾

문 의 처

02)6788-5427

11)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